개정 증보판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

퇴직 후 재산신고부터 취업심사, 행위제한까지

인사혁신처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

Contents

01
목적

03
일반적
행위(제한) 의무

09
시기별
행위(제한) 의무

41
단계별 퇴직공직자 및
재직자 행동지침

47
부록1. 분야별 사례로
보는 행위제한 의무

56
부록2. 관련 법령 규정

퇴직 전·후 지켜야 할 행위(제한) 의무

일반적 의무

- ☑ 비밀 엄수의 의무
- ☑ 이해충돌 방지 의무
- ☑ 재산변동사항 신고 의무
- ☑ 성실등록 의무

일반적 행위(제한) 의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하는 행위(제한) 의무입니다.

시기별 의무

퇴직

1. 취업청탁 알선 금지
2. 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
3. 취업제한
4. 업무취급 제한

재취업

5. 업무내역서 제출
6. 취업사실 신고
7. 취업이력 공시

시기별 행위(제한) 의무

퇴직 전–퇴직 후–재취업 후 각 시기별로 지켜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상의 행위(제한) 의무입니다.

Don't 1 — 취업청탁 · 알선 금지 (10쪽)

재직 중
본인 또는 소속 직원의
취업청탁 · 알선 NO !

Don't 2 — 부정한 청탁 · 알선 금지 (14쪽)

재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부정한 청탁 · 알선 NO !

Don't 3 — 취업제한 (16쪽)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은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Don't 4 — 업무취급 제한 (28쪽)

-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 고위공직자 등의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은 전 소속기관이 처리한 일정 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Do 5 — 업무내역서 제출 (34쪽)

고위공직자 등의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1년 경과 후1개월 내)

Do 6 — 취업사실 신고 (37쪽)

고위공직자 등의 경우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
심사대상기관 취업시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일부터 1개월 내)

목적

이 가이드북은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신 공직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하는 행위(제한) 의무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신뢰를 높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일반적 행위(제한) 의무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등 일정한 의무를 가집니다. 다음에서는 공직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반적 행위(제한) 의무**를 소개합니다.

(1) 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

참고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위반 사례

공무원 A가 총 3,000여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 연예인, 출입국직원 등 총 371명의 출입국 내역 및 주민등록사진을 업무 외에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조회한 경우

☞ 중앙징계위원회는 A가 출입국 사범 조사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시간 중 개인적 호기심 충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였으며,

특히 국회의원의 출입국기록 무단 조회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출입국관리 행정의 신뢰를 크게 해쳤으나,

☞ 단순 열람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점, 열람 정보의 외부 유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 3월로 징계의결 하였습니다.

- 특히,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할 경우,
  ① 해임 또는 징계 (법 제22조제10호)
  ②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8조)

위반 사례

퇴직공무원 A가 재직 중 소속기관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재산심사를 담당하며 알게 된 B직원의 친족관계, 재산등록사항 등을 다른 동료들에게 누설한 경우

☞ A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를 위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누구든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3조)

(2) 이해충돌 방지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및 영 제2조의2)

-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담당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과 **상담 후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또한 퇴직 후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을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재산변동사항 신고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6조)

-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7쪽]는 **재산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간 중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정기재산변동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 간 |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예: 2020년 4월 13일에 퇴직한 경우 → 2020년 6월 30일까지 신고

  내 용 |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 예: 퇴직 전 최종적으로 정기재산변동신고(2019년 12월 31일 기준)를 한 경우
  →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 예: 2020년 3월 3일에 등록의무자가 되어 그 해 10월 21일에 퇴직한 경우
  → 2020년 3월 3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속·직계비속에 대해서는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고지거부 신청 가능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
  ※ 퇴직일 익월 15일(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시 금융 및 부동산정보 회신자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는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없이 퇴직신고서에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포함하여 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중1)
  ① 해임 또는 징계 (법 제22조제2호)
  ②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제3항제1호)

잠깐! "재산등록의무자"란? (법 제3조 및 영 제3조)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 지자체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 공무원, 감사·경찰 등 특정분야*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국방계약 등 특정분야** 5급 공무원

  * 감사·경찰·소방·조세·검찰·회계·건축·식품위생 등 공정위 소속 공무원 중 기업조사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부서

  ** 군사시설, 국방계약·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등
- 4급 상당 이상 연구·지도관,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등
- 6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4급 이상 국정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상당 이상 일반군무원
-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학장 포함), 전문대학장,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 경사(자치경사 포함)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장·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 공직유관단체[13쪽]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

  * 금감원(4급이상), 한국은행(2급이상), 예금보험공사(2급이상), 무역보험공사(2급이상), 철도시설공단(2급이상), 산업부 지정 원자력발전 유관단체(2급이상), 국방부 또는 방사청 감독받는 유관단체(국방부 장관 임명 직원, 단,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은 수석급 이상)

(4) 재산의 성실등록(신고) 의무 등 (공직자윤리법 제12조)

- 재산등록의무자[7쪽]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재산신고를 할 때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산등록대상 친족*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성실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 중1)

  ① 해임 또는 징계 (법 제22조제7호, 제8호)

  ②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제3항제2호, 제3호)

위반 사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재산등록의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사인간 채무 2건(4억원)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 변경,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경우

☞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재산등록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점, 소명과정에서 허위의 증빙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시기별 행위(제한) 의무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취업청탁, 퇴직 후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업무의 취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다음에서는 공직자가 퇴직 전–퇴직 후–재취업 후 각 시기별로 지켜야 하는 행위(제한) 의무를 소개합니다.

퇴직 전 당당하게 퇴직하세요!

① 취업청탁·알선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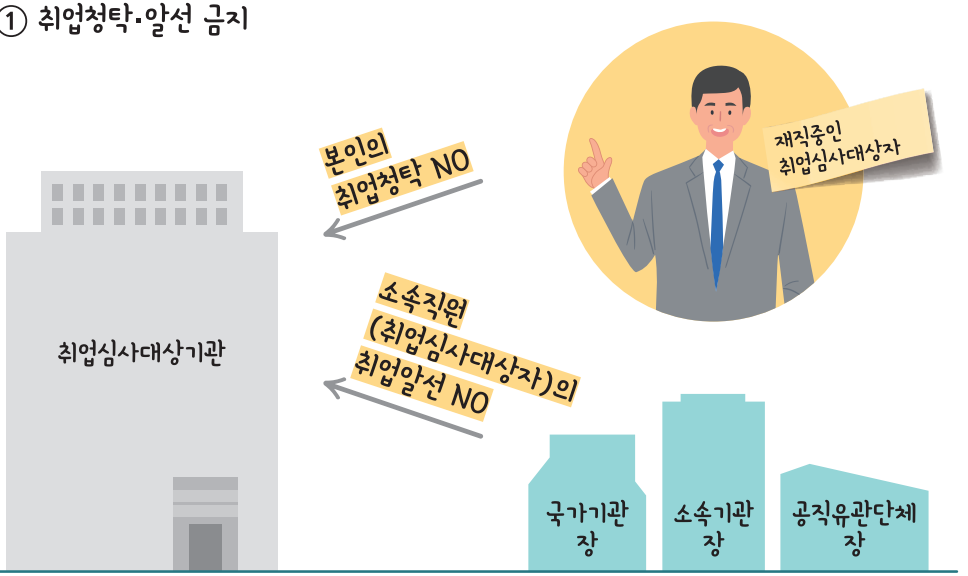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1 퇴직 전

(1) 취업청탁·알선 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 재직자는 업무 관련 기업에 대하여 **본인의 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 상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18쪽]

  내 용 |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일정 업무(참고2)[12쪽]와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20쪽]에 **본인의 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제재 | 해임 또는 징계 (법 제22조제18호)

위반 사례

취업심사대상기관인 OO건설회사㈜의 소속직원 A에게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가 건축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본인을 OO건설회사㈜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경우

☞ B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제1항(본인의 취업 청탁 금지)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의 장 등은 업무 관련 기업에 **소속 직원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 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13쪽]의 장

  내 용 |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일정 업무(참고2)[12쪽]와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20쪽]에 **소속 직원(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제재 | 시정권고 (법 제23조)

위반 사례

OO시 시장 A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인 OO제약회사에 공장설립허가와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고, OO시의 소속 직원인 B의 OO제약회사 취업을 알선한 경우

☞ A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제2항(소속 직원의 취업알선 금지)을 위반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2. 일정 업무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32조)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예 : 재정보조 등의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기준·평가항목 등 결정, 신청서 접수·심사 등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예 : 신청서 접수, 인·허가 등 조건 충족여부 검토·확인, 사후관리·감독 등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예 : 검사·감사계획 등 수립,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결과처분 검토 및 통보 등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예 : 조세의 조사계획 등 수립, 대상업체 선정, 조사인력편성, 조사, 조사결과 정리 등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예 : 기본(사업)계획 수립, 규격 등 검토, 제안서 검토·평가,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대금지급, 후속조치 등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예 : 검사·감독 등 계획 수립,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 심리·처분 검토 등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예 : 취업심사대상기관과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 조세·특허, 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심판·심결 등과 관계되는 업무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예 : 정책 등의 수립·조정·시행, 평가·감사·후속조치, 제도개선 반영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잠깐! "공직유관단체"란? (법 제3조의2 및 영 제3조의2)

공공성이 큰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해당 임직원에 재산등록·공개의무 등을 부과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도모

1. 한국은행
2. 공기업
   * 예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자체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자체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예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예 :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5.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연간 10억 원 이상)를 받는 기관·단체
   * 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적십자사 등
6.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또는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단체
   * 예 :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주),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7.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전액 재출자·재출연한 기관·단체
   * 예 : 코레일유통(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한국벤처투자(주)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위의 5~7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퇴직 후 공정하게 시작하세요!

①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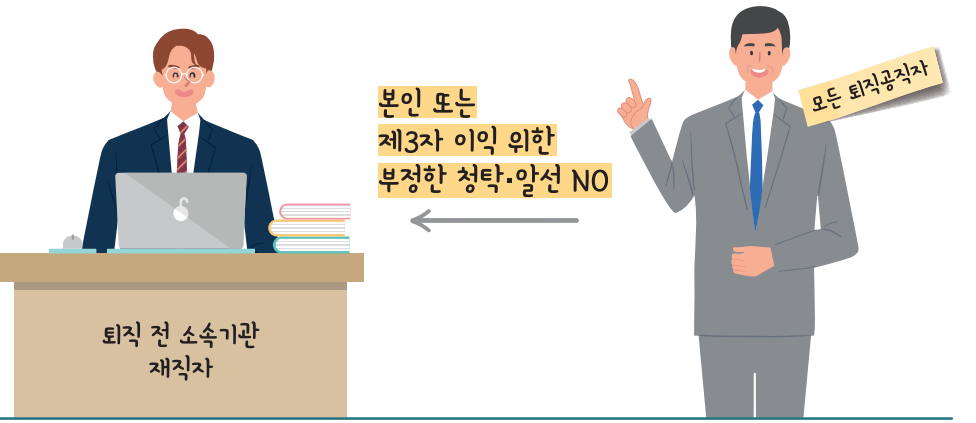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2 퇴직 후

(1)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 모든 퇴직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재산상·비재산상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 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13쪽]의 임직원

내 용 |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9조제3호)

참고 3.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 (영 제35조의4제4항)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위의 1~4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위반 사례

OO중앙부처 소속 OO국장으로 퇴직한 고위공무원 A의 자녀 B가 OO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A가 OO중앙부처 인사과장甲에게 B의 면접점수를 높여 달라고 청탁한 경우

☞ A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A로부터 청탁을 받은 인사과장 甲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공정하게 시작하세요!

② 취업제한

퇴직일부터 3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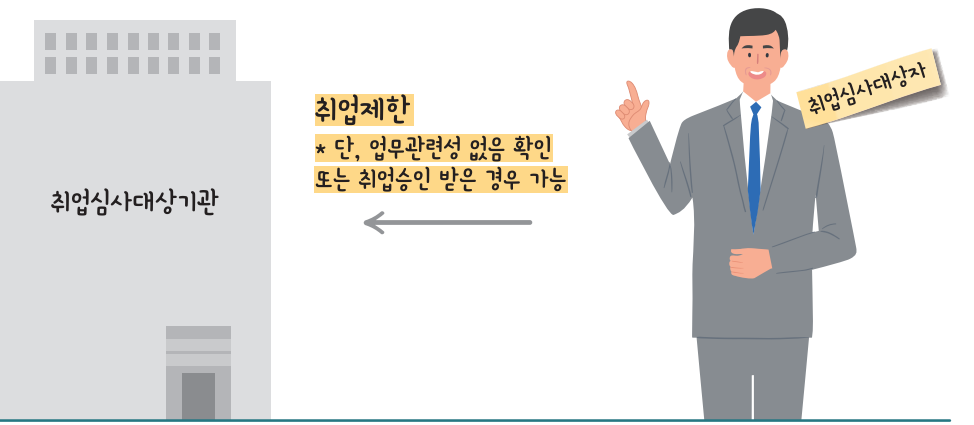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퇴직공직자는 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사익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제도 등을 소개합니다.

(2)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 ①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②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가능)

대 상 | 취업심사대상자[18쪽]

제한기간 |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내 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9쪽]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20쪽]에 **취업 제한**

* 퇴직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 소속기관의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내 업무는 모두 포함됨

> ※ 취업의 범위
> 사외이사·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관계없이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

잠깐! "취업심사대상자"란? (법 제17조 및 영 제31조)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 지자체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 공무원, 감사·경찰 등 특정분야*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국방계약 등 특정분야** 5급 공무원

  * 감사·경찰·소방·조세·검찰·회계·건축·식품위생 등, 공정위 소속 공무원[1]

  ** 군사시설, 국방계약·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등

  ※ 단, 6~7급 공무원(경찰은 경감~경사, 소방은 소방경~소방장) 중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면제[2]

- 4급 상당 이상 연구·지도관,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등
- 6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4급 이상 국정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상당 이상 일반군무원
-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학장 포함), 전문대학장,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 경사(자치경사 포함)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장·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 공직유관단체[19쪽]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

  * 금감원(4급이상), 한국은행(2급이상), 예금보험공사(2급이상), 무역보험공사(2급이상), 철도시설공단(2급이상), 산업부 지정 원자력발전 유관단체(2급이상), 국방부 또는 방사청 감독받는 유관단체(국방부 장관 임명 직원, 단,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은 수석급 이상)[3]

1 2020. 7. 5.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2 2020. 6. 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3 2020. 7. 5.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잠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란?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32조)

1. 재산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2. 고위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 1급(상당) 이상 직원
   *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5.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

Q 재산등록 의무면제자로서 퇴직한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인지?

A 전보 등으로 인해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공직자가 퇴직한 경우 **의무면제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보직변경 등 면제사유가 발생한 1차 의무면제일을 기준으로 함

Q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으나, 재산등록기간인 2개월 이내 퇴직하여 재산등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대상인지?

A 해당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4급으로 승진한 경우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잠깐! "취업심사대상기관"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33조)

구 분	기 준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협회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법인·단체
법무·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사립대학, 초·중등 사립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 제외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외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특정분야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체(최근 3년 이내 중개수수료 신고한 업체), 식품·의약품 등 관련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취업심사대상기관 여부 확인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취업제한·행위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 〉 검색란에 "기업명"으로 조회

Q 취업할 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취업심사 없이 취업하였으나, 1년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A 취업 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취업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더라도 **별도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업체와 하나로 합병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게 되므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업체가 연도 중 별개의 법인으로 독립된 경우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A 독립된 기관이 기 고시된 업체와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상호의 변경이나 사업단위의 분리가 있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위반시 제재

임의취업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0조제3항제8호)

+

업무관련성 無	업무관련성 有		
⇩	⇩		
취업가능	해임* (법 제1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9조제1호)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이 임의취업자의 해임요구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제3항제10호)

Q 사립대학에서 순수학문 연구를 위해 평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A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등의 직위(소위 보직교수)에 있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되나,
순수 학문적 전문성을 살려 대학의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광역의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은?

A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지방의회 및 지자체 전체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참고2)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고위공직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기관의 업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A 본부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전체 업무,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취업심사(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② 취업승인)

절 차 | ①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②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취업승인"** 신청 가능

심사결과 |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거나**
② **특별한 사유가 있어 취업승인** 받은 경우 취업 가능

참고 4.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영 제34조제3항)

1. 국가안보,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자체 출자(재출자) 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술 분야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 등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 종사했던 분야로 재취업하는 경우
   ※ 단,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채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함
7. 본인 처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은 경우
8. 퇴직 전 처리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은 경우
9.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은 경우
   ※ 단,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함

참고 5. 취업심사 절차

퇴직공직자

-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신청)
  - –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 ▶ 제출서류
  -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 본인이 직접 작성
  - – 취업예정확인서 — 취업예정기관에서 발급

⇩

소속기관장

- ▶ 확인요청사항(취업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서 작성
- ▶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

- ▶ 취업심사대상기관, 업무관련성 여부 등 조사·확인

  확인 사항(영 제33조의3제1항)
  -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밀접한 업무관련성(참고2)이 있는지 여부
- ▶ 확인요청사항(취업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서 작성
-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 취업제한(승인) 여부 결정
- ▶ 요청인(신청인), 소속기관장,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사결과 각각 통보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일은 각 관할 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되며 매년 1월초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당해 연도 월별 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사례 체크하기!

1. 취업가능 결정

국방부 중령 A가 취업심사대상기관 B건축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를 요청한 경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부서 기준 처리한 업무가 없음)을 심사하여 취업가능을 결정하였습니다.

2. 취업제한 결정

교육부 정책보좌관 A(고위공무원)가 B대학교에 국제교류팀장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를 요청한 경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9억원 규모의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선정사업 등 2건)을 심사하여 취업제한을 결정하였습니다.

3. 취업승인 결정 ①

국방부 공군작전사령부 A사령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 B 주식회사 전무로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승인을 요청한 경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 해당하는 취업승인사유(항공기엔진 개발 및 부품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음)가 있어 취업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 사례 체크하기!

4. 취업승인 결정 ②

A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B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법률분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C부처 법무과장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이 후 임기가 만료되어 전 직장인 B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하고자 취업승인 심사를 요청한 경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A가 채용 당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재직 중 전 직장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업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6호)

5. 취업 불승인 결정

A시 건설교통국장이 A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승인을 요청한 경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불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퇴직 후 공정하게 시작하세요!

③ 업무취급 제한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취급 NO
* 단, 국가 안보·공익 등 위해 필요 & 승인받은 경우 가능

퇴직일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한
일정 업무 취급 NO
* 단, 국가 안보·공익 등 위해 필요 & 승인받은 경우 가능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3) 업무취급 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 **모든 공직자**는 재직 중에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참고2)**를 퇴직한 후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대 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13쪽] 임직원

내 용 |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참고2)**[12쪽]의 퇴직 후 취급 제한

> ※ 처리란 ?
> 직제·정관·규정에 따라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공문서에 결재를 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명 등을 한 경우 등을 의미
>
> ※ 취급이란?
>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관련되어 본인 또는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예 외 | **국가안보·공익 목적 등** 해당 업무취급이 필요하고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시기 | 취업예정기관 취업 전 또는 후 모두 신청 가능
단, 취업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참고2)의 처리 전에 신청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9조제2호)

- **특히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사전 방지를 위해 퇴직한 후 2년 동안은 **일정 업무(참고2)**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대 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9쪽]

제한기간 | 퇴직한 후 2년 동안

내 용 |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서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20쪽]**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참고2)**[12쪽]의 취급 제한

예 외 | **국가안보 및 공익 목적 등** 해당 업무취급이 필요하고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시기 |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전 또는 후 모두 신청 가능
단, 취업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업무(참고2)의 처리 전에 신청

위반시 제재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1항)

참고 6. 업무취급 심사 절차

퇴직공직자

▶ 업무취급승인 요청
- 취업 개시 전 또는 후*

* 단, 취업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는 일정 업무(참고2)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

▶ 제출서류
- 업무취급승인 신청서 — 본인이 직접 작성
- 취업예정확인서 — 취업예정기관에서 발급

⇩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소속기관장

▶ 업무취급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

▶ 업무취급 심사대상자 여부 등 조사·확인

확인 사항(영 제35조의2제2항)
- 신청인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 신청업무가 일정 업무(참고2)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안보·공익 목적 등(법 제1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취급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업무취급승인 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 검토
▶ 업무취급승인여부 결정
▶ 요청인(신청인), 소속기관장,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사결과 각각 통보

✓ 사례 체크하기!

1. 업무취급승인 결정

고용노동부 A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근로복지공단 이사로 취업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2호(인·허가) 및 제7호(사건의 수사)에 대한 업무취급승인을 요청한 경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존재하나, 공공의 이익 및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취급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2. 업무취급 불승인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A가 한국철강협회에 취업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5호(위탁·연구용역) 및 제6호(감사)에 대한 업무취급승인을 요청한 경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국철강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총 4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으며 그 중 1건은 진행 중(법 제17조제2항제5호 해당)인 점,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기감사 등의 업무가 존재(법 제17조제2항제6호 해당)하는 점 등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고, 공공의 이익 및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취급 불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Q 모든 공직자는 재직한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의 전부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A 재직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 참고2)가 취급금지의 대상입니다.

Q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의 취급제한은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기관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A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 참고2)를 취급하는 경우라면 취업심사대상기관인지 여부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Q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영구히 취급할 수 없는 것인지?

A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취급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업무취급이 가능합니다.

Q 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해당 기관이 처리한 업무 이외에 소속 중앙행정기관(본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처리한 업무의 취급도 금지되는지?

A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지방국세청에만 근무한 경우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취급이 2년간 금지됩니다.

떳떳하게 일해주세요! 재취업 후

① 업무내역서 제출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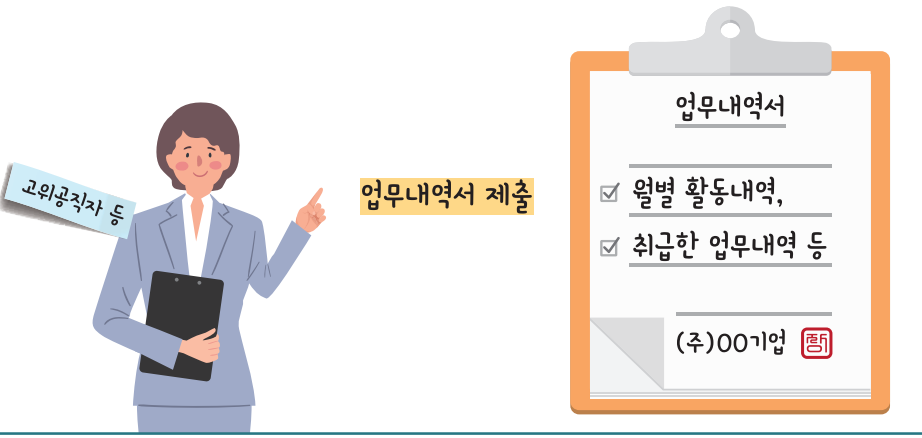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3 재취업 후

(1) 업무내역서 제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영 제35조의3)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 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9쪽]

제출시기 | 퇴직일부터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2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 예 : 2020년 5월 26일에 퇴직한 경우

→ 2021년 6월 26일까지 제출, 2022년 6월 26일까지 제출

제출내용 | 취업심사대상기관[20쪽]에서의 월별 활동내역,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비공개

절 차 |

대상자	소속기관장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장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
업무내역서 제출 (소속 취업심사 대상기관 장 확인 得)	의견서 첨부하여 이송	의견서 첨부하여 이송	심사

위반시 제재 |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3항제9호)

Q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2년 경과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도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인지?

A 업무내역서는 퇴직 후 2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데, 2년이 경과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Q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 이외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도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업무내역서는 퇴직 후 2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데, 취업심사대상기관 외의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Q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 작성 시 퇴직 후 2년 동안 2개 이상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근무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A 퇴직 후 2년간 소속기관의 일정 업무 취급제한이 목적이므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매 1년이 지난 1개월 이내 취업한 모든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업무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떳떳하게 일해주세요! 재취업 후

② 취업사실 신고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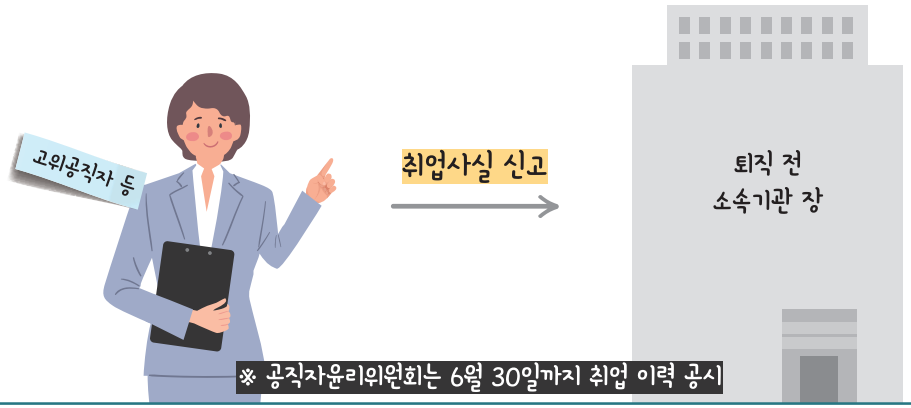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2) 취업사실 신고 및 취업이력 공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취업사실 신고

대 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9쪽]

내 용 |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20쪽]에 취업한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취업사실 신고서 제출

신고기간 |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시 제재 | 취업사실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3항제11호)

취업이력 공시

대 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9쪽]

내 용 |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취업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직급)

절 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취업이력을 조사**(12월 31일 기준)하여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

Q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간 3년이 지난 후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 취업했다가 이직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이직한 시점이 퇴직일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퇴직공무원의 예시입니다.

"나의 퇴직달력"

2020년 5월 26일, 오랫동안 몸담아 온 공직을 떠난다.
과연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후회 없이 적극적으로 일했을까.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2020년 6월

퇴직 전 취업청탁 절대 NO

퇴직 후 부정한 청탁·알선 절대 NO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퇴직한 날	5/27	5/28	5/29	5/30	5/31
6/1	2	3 1. 이날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승인) 요청[1] 2. 업무취급 승인신청[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날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3]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날까지 고지거부허가 신청 (퇴직일부터 1개월 내)	26	27	28

1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위원회 개최예정일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통상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되며, 3주 전 수요일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재취업 후 업무취급승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일정 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해야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3 퇴직일이 1일인 경우는 그달의 15일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29	6/30	7/1	2	3 취업개시일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날까지 퇴직재산 변동신고서 제출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8/1	8/2
8/3 이날까지 취업사실신고서 제출 (취업일부터 1개월 내)	8/4	8/5	8/6	8/7	8/8	8/9

업무내역서 제출(1차)
2021년 6월 26일까지
(퇴직일부터 1년 경과후 1개월 내)

업무내역서 제출(2차)
2022년 6월 26일까지
(퇴직일부터 2년 경과후 1개월 내)

취업이력 공시 예정
2021년 6월 30일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www.mpm.go.kr)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www.peti.go.kr)

단계별 퇴직공직자 및 재직자 행동지침

단계	행동지침
접촉 전 (퇴직공직자의 행동지침)	○ **이해충돌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와 **대면접촉** 또는 통신수단(전화·이메일·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접촉 자제** ○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 등과의 불필요한 **사적 모임·접촉 자제**
청탁·알선 행위 발생 (재직자의 행동지침)	○ 구체적인 청탁 또는 알선 행위가 **발생**하면, 1. **즉각 접촉 중단** 2. **거절의 의사표시 분명**하게 전달 3. 청탁 또는 알선 사실의 **신고** (의무사항)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해임 또는 징계** ※ 재직자 外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직무수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요청 가능

1 접촉 전 단계 (퇴직공직자의 행동지침)

- **이해충돌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와 **대면접촉** 또는 통신수단(전화·이메일·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접촉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 **이해충돌 대상 직무 예** (법 제17조제2항) 〉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 등**과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사적 모임**을 **알선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던 자와 현 재직자가 함께 하는 친목회합, 여행 등 사적 모임을 알선하거나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현 재직자를 방문하게 하는 행위, 식사자리에 합석시켜 직무 관련 대화를 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도록 합니다.

2 청탁·알선 행위 발생 단계 (재직자의 행동지침)

(1) 접촉 중단 및 분명한 거절 의사표현

-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았을 때 그 경중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법률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 법령에 따른 피해구제 요구, 공익적 목적의 정책·제도개선 건의, 누구에게나 공개 가능한 관련 정보의 요청 등은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2) 청탁 또는 알선행위 신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4)

- **신고주체**

  재직자 | 해당 **청탁 또는 알선이 부정한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 |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및 방법**

  내 용 |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

  방 법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른 '청탁·알선행위 신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

  * 별지 제20호의6호 서식(당사자 신고용), 별지 제20호의7호 서식(제3자 신고용)

신고의 처리

신고	①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② 수사기관에 통보	③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통보

① 소속기관의 장 등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등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공개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조치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외)

☞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조사결과 사실인 경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포 상 |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습니다.

(3) 직무수행의 적정성 확보조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4)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 해당조치를 요청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해당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록1. 분야별 사례로 보는 행위제한 의무

1 취업청탁·알선 행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이런 행위는 NO!

▶ **인·허가 등 분야**

☞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건축허가·영업허가 등을 조건으로 본인의 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 **재정보조 분야**

☞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재직공무원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인의 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 장려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중복지원 등의 결정 권한을 가진 재직공무원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장려금을 조건으로 본인의 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 **공 통**

☞ 기관장이 민간 대기업 등에 소속기관 퇴직 고위간부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

2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영 제35조의4)

① 법령 위반 |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지위·권한 남용 |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③ 비밀정보 획득 |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

④ 위법사항 묵인 요구 |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⑤ 공정한 경쟁 저해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① 법령 위반 |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사, 인·허가, 계약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하도록 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 "법령"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뿐만 아니라 조례와 규칙도 포함

이런 행위는 NO!

▶ 인사 분야

- 채용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채용기준·채용절차 등을 변경 또는 시험점수를 조작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 기관장을 통해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시험 면제 또는 특정인의 면접점수 조작을 요청하는 행위

☞ 채용공고시 해당분야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하였음에도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특정인의 채용을 요청하는 행위

☞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서류시험 합격자를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려 탈락대상자인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행위

-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승진·전보·인사교류·파견 등의 기준·요건 또는 절차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승진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의 승진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등을 하는 행위

☞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성과평가점수를 수정하거나 승진예정인원을 임의로 늘려줄 것을 부탁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의결 절차 및 징계사유 등을 변경하여 특정인이 이익을 얻도록 요구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NO!

▶ 인·허가 등 분야

- 인·허가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인·허가 등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건축허가를 해줄 것을 기관장 등을 통해 요청하는 행위

☞ 법인설립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정인에게 법인설립 인가를 해줄 것을 청탁하는 행위

▶ 조달·계약 분야

☞ 친구인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내부 평가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탁하는 행위

▶ 재정보조 분야

☞ 보조금(장려금) 지급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보조금(장려금) 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는 행위

② **지위·권한 남용** |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와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도6251판결)

이런 행위는 NO!

▶ 인사 분야

☞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위기관을 통해 그 산하기관에 특정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행위

▶ 수사·재판 분야

☞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할 수 있도록 검찰청 친구에게 부탁하는 행위

▶ 조달·계약 분야

☞ 방위사업청 재직자에게 특정 방산업체 대표를 소개하고, 해당 방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③ **비밀정보 획득** | 직무상 비밀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 또는 회의 등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상 비밀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결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단,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2669 판결)

이런 행위는 NO!

▶ **인사 분야**

☞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를 위하여 인사담당자에게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인·허가 등 분야**

☞ 개인사업자인 친구의 부탁으로 경쟁업체의 신소재 특허출원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특허출원 담당자에게 정보를 알려줄 것을 부탁하는 행위

▶ **검사·감사 분야**

☞ 지인인 건설장비 대여업자의 과적단속 회피를 위해 과적차량단속업무 담당자에게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조사·감독 분야**

☞ 금융감독원 간부를 통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사업체,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NO!

▶ **수사·재판 분야**

☞ 정보수사국장에게 조합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사실을 해당 조합의 안전본부장에게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조달·계약 분야**

☞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해당 사업 관련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요구하여 평가위원 후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 **기 타**

☞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증권사 등에 해당 기업의 내부정보, 고객 매매주문 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

④ **위법사항 묵인 요구** |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사, 인·허가, 계약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도록 강요 또는 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NO!

▶ **인사 분야**

☞ 인사담당자가 근평위원회 회의록 등 근무평정 관련 문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게 되자 교육청 근평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해당 사실을 묵인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조달·계약 분야**

☞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계약당사자 선정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부하직원이 알게 되자 해당 사실을 비밀로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⑤ **공정한 경쟁 저해**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인 관행이나 통상의 업무처리절차를 따르지 않도록 하고 업무처리 방향의 변경 또는 처리 시기의 조정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NO!

▶ **금융·조세 분야**

☞ 금융 감독 관련 퇴직공무원이 금융기관 취업 후 정당한 금융 감시 내지 감독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행위

☞ 세무 관련 퇴직공무원이 민간기업 취업 후 공평한 조세 부담을 회피하도록 활동하는 행위

▶ **재정보조 분야**

☞ 보조사업의 계획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특정인·특정단체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조달·계약 분야**

☞ 설계평가에서 특정 건설회사에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조달 관련 퇴직공무원이 민간기업 취업 후 해당 기업이 관급공사 수주나 조달물품 납품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부록2. 관련 법령 규정

국가공무원법

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영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10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등록의무자가 되어 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1]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 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 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나목과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4.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5.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9.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10.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1.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1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6.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9. 제1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20.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22.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2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사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3.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제1항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영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4)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1조제1항제20호·제21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영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 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 관리·지도·단속 업무

2. 인·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검사·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영 **제34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업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 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35조의4(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2.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했는지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했는지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관리 및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영 **제35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또는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법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35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

한다)·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7.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8.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법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2]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법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9.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0.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11.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 개정 증보판

퇴직 후 재산신고부터 취업심사, 행위제한까지

발 행 일 I 2020년 6월

발 행 처 I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과, 취업심사과

문 의 처 I 재산등록(신고) 및 공개 ☎ 044-201-8482 재산심사과

취업승인 및 확인심사 ☎ 044-201-8477 취업심사과

행위제한제도 및 업무취급 심사 ☎ 044-201-8480 취업심사과

취업사실신고 및 취업이력공시 ☎ 044-201-8478 취업심사과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인사혁신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 업 팀 I 총괄 : 윤리복무국장 이정민

담당 : 윤리정책과 서은희, 취업심사과 정한기

디자인 · 인쇄 I 에코디자인 ☎ 044-868-0054

※ 본 책자의 전문(全文)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